

2023년 제1회 임실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산업건설)) 채용시험 재공고

2023년 제1회 임실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산업건설))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5월 19일

임실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시간	근무예정부서
정책지원관 (산업건설)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 40시간	의회사무과

2. 주요 업무 분야

구분	담당 업무
정책지원관 (산업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건설분야 의정활동 지원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7. 기타 의회 의정활동 지원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 거주지 제한 : 1차 공고일(2023.05.01.)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응시자격 제한(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 4. (생략)

③ ~ ⑥ (생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 ⑥ (생략)

나. 임용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요건
정책지원관 (산업건설)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p>▶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학사학위 : 임용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농업학과, 환경학과, 산림학과, 건축학과, 토목학과 등)</p> <p>**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국내 대학 및 대학원(부설 연구기관 포함) 등에서 농업, 환경, 녹지, 시설(건축, 토목) 관련분야 경력</p>

- ※ 경력요건의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음.
- ※ 전임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를 인정함.
-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학위취득 과정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5항)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6.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면접시험일(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5. 26.(금) ~ 5. 31.(수)	6. 7.(수)	6. 12.(월) ~ 6. 14.(수) (기간 중 1일)	6월 중

- ※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일 공고는 임실군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 통지함.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함.
-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인하여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이 경우 1차 공고 및 재공고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됨.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응시원서 교부 : 임실군의회 홈페이지 게재(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나. 접수기간 : 2023. 5. 26.(금) ~ 5. 31.(수) / 평일 09:00 ~ 18:00

-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임실군의회 1층)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응시수수료는 '임실군 수입증지' 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발급받아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 통상환증서 발급은 우체국 금융업무 마감시간(16:00)에 유의
- ※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 인사담당자 (우편번호 55927)

마.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필수)	○ 해당 응시분야에 맞는 서식으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필수)	○ 임실군 수입증지 첨부 - 지방행정주사보 7,000원 ※ 수입증지 판매장소 : 임실군청 1층 주택토지과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등기우편 접수시 임실군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자는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이력서 1부 (필수)	○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것만 기재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필수)	○ A4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 A4 5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⑥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 (해당자)	○ 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 ○ 석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⑦ 해당분야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수)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날인) ○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기재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자체서식
⑧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 원본 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 자필 서명 필수	[별지 제7호 서식]
⑩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필수)	○ 자필 서명 필수	[별지 제8호 서식]
⑪ 주민등록 초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필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별지 제8호 서식]
⑫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공단 방문 발급 ○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해당자)	○ 수급기간 명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에는 공고일 이전의 서류도 가능함.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 제출서류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임용예정일, 근무기간 및 보수

- 임용 예정일 : 2023. 6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용 등급별 연봉하한액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근무시간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64,776	46,006	주40시간 근무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
-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 등)는 탈락자가 원하여 신청할 경우 반환합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나.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시험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바. 기타 문의사항은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63-640-2694 / 전자우편 : narae1205@korea.kr)

-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임실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imsil.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함.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직렬)	선발예정인원
정책지원관(산업건설)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1명

임용예정기관명	임용기간
임실군의회	임용일로부터 2년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입법사례 분석 - 예산안·결산 등 분석 - 의원 정책자료 작성 - 그 외 정책지원관의 직무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 조정능력, 분석적 사고력, 상담능력 및 협동정신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기능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식 ○ 임실군 주요사업, 현안사항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능력 ○ 예산 및 재정 동향 관련 지식 ○ 정책발굴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에 관한 지식

임용분야 : 정책지원관	
응시자격	<p>▶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학사학위 : 임용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농업학과, 환경학과, 산림학과, 건축학과, 토목학과 등)</p> <p>**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국내 대학 및 대학원(부설 연구기관 포함) 등에서 농업, 환경, 녹지, 시설(건축, 토목) 관련분야 경력</p>